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해양이용협의 실시 등〉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626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해양이용협의 실시 등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7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이하 “해양이용협의”라 함)를 하도록 규정하고, 하위법령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일반과 간이로 구분하고 있음.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 굴착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해당 사업은 굴착작업으로 인한 유발(誘發)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굴착면적을 기준으로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되,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협회를 보다 충실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해양이용협약의 실시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이용협약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약사업에 대하여는 협약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약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이용협약의 대상) ① (생략) <u><신설></u>	제9조(해양이용협약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협약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간이 해양이용협약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이용협약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할 수 있되, 유발(誘發)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일반 해양이용협약의</u>

② ~ ④ (생략) ⑤ <u>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생략) ②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에 관하여는 <u>제9조제4항제1호</u>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③ (생략)	<u>절차를 거쳐야 한다.</u> 1. <u>일반 해양이용협의사업: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u> 2. <u>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u>그 밖에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와 해양이용협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u> -----.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9조제5항제1호</u>-----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기관의 장은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의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¹⁾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협의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별표 1(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서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 및 사업 규모에 따라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①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과 ②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예컨대 현행법령 체계를 보면,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굴착 면적 및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해양이용협의(간이·일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있음.

[표] 해양이용협의·영향평가 사례(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비교

(영향 小)간이해양이용협의	↔ 일반해양이용협의 ↔	해양이용영향평가(영향 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그 <u>면적이 5만㎡ 미만</u> 이거나 그 <u>물량이 10만㎥ 미만</u> 인 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그 <u>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u> 이거나 그 <u>물량이 10만㎡ 이상 20만㎡ 미만</u> 인 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그 <u>면적이 10만㎡ 이상</u> 이거나 그 <u>물량이 20만㎡ 이상</u> 인 사업

- 한편, 이와 같은 일반해양이용협의와 간이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서 검토 시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첨부1 참고)²⁾.

다만, 현행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즉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해양이용협의 절차의 일부가 간소화되는 상황임.

□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³⁾)은 공유수면의 굴착면적 2만m² 미만 소규모 사업에 해당하여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간이 해양이용협의사업이더라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과 같이 유발지진 발생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일반 해양이용협의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3)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하려는 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 작업이 작년 12월 20일 시추 개시 후 47일 만인 2월 4일 종료되었고, 시추 과정에서 취득한 검층자료와 시료 등을 전문 용역사로 보내 정밀 분석과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대략 6개월 소요될 예정임

□ 해양이용협의 제도의 목적은 해양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그 처분 전에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재 시행령상의 기준이 규모와 면적 중심으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어 그 외의 요소를 포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동해 심해전 가스개발사업은 유발지진 위험 발생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보다 전문적인 기관(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일반이용협의 대상사업의 확대를 통해 평가의 충실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참고로, 일반해양이용협의와 간이해양이용협의의 평가항목과 평가서 작성기간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표]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간이해양이용협의 사례 비교

구분	간이해양이용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
주요내용	부잔교, 해변테크, 오수관로 설치 등	공유수면 매립, 어촌뉴딜사업, 방파제 축조사업 등
대행비용	5~30백만원(협의 사례 기준)	50~100백만원(협의 사례 기준)
작성기간	1개월	2~5개월
평가대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협의서 작성	해양이용현황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 문헌조사	평가항목(9개)별 해양환경조사 필요 - 현지조사(2계절) 및 문헌조사
평가항목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수과원) 검토 생략 가능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수과원) 검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

- 다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면에서 지진에 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지진을 자연지진 또는 인공지진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발지진이라고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이란 지구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과 핵실험이나 대규모 폭발 등으로 지반이 흔들리는 인공지진을 말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유발지진 발생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해양이용협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지진 관련 사항 외에 위험성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사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가 해양이용협회의 관련하여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행정규칙인 고시를 살펴보면, 「해양이용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제3항4)에서는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더라도 판단이 곤란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을 특정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취지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음.

4) 「해양이용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검토의뢰) ③ 협의기관의 장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해양환경정책 또는 행정계획 등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관련부서 및 소속기관을 특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은 간이해양이용 협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는 설명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현재 시행령에 일반·간이 해양이용협의를 구분하는 규정이 있어 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낮고, 현행 기준에 따라 간이 해양이용협의를 실시하더라도 유발지진 발생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협의 의견을 통보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계 내에서도 협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1

해양이용협의영향평가 세부절차도

